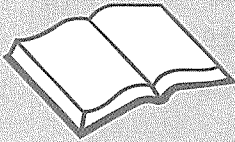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도서정가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성일*

“도서정가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문화주권입니다.” “시민·저작자·도서관·출판 단체는 도서정가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6월 23일자 일간지 1면 하단에 ‘도서정가제와 독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문화 단체’ 명의로 실린 의견 광고의 머리 문구다. 광고를 게재한 시민·문화 단체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네트워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등의 독서운동 단체를 필두로, 저작자 단체(한국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출판·도서관 관련 단체(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골고루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책은 일반 소비재 상품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공공재”라고 전제하면서, 도서정가제의 이로운 세 가지를 꼽는다. 도서정가제는 대부분의 문화 선진국이 시행하는 기초적 문화주권이고, 책값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며, 정가제가 무너지면 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 광고에선 도서정가제를 “동일한 책을 언제 어디서나 전국 균일가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제도”라고 정의한다.

아무튼 이를 통해 우리는 출판계의 해묵은 숙제인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도화선이 됐으나, 어정쩡한 질충

이 화근이 되리라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1호로 만들어져 이듬해 2월 27일부터 발효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도서정가제를 최초로 명문화한 법률이다. 하지만 법 제정시 이해 당사자의 반발에 밀려 어중간하게 봉합한 법규정은 언제든 갈등을 분출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명문화한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은 법률 시행 직전에도 드러났던 바, 2003년 2월 한달간 인터넷 서점에는 마지막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독자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도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고, 인터넷 서점은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의 도서정가제 관련 법규정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2조는 도서정가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적용 2008.2.27까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적용 2008.2.27
까지]

아울러 부칙 제2조(적용시한)에서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하위 법령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좁히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분야의 책이 출판 및 도서진흥법의 정가제 규정을 적용 받았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 실용서가 제외되었고,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용 학습참고서도 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게다가 동 법의 정가제 관련 조항 자체가 5년간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인터넷 서점만은 출간 1년 안쪽의 신간에 대해 10퍼센트 할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설득력 있는 유보 조항이었다. 하지만 정가제 미적용 분야의 단계적 확대와 한시적 규정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당히 얼버무린 결과다. 도서정가제를 지키려는 측은 어떻게 해서든 정가제를 명문화하는 방향에 주력한 셈이고, 인터넷 서점이 대표 하는 정가제 반대 진영은 범규정을 수용하는 한편으로, 약간의 실리를 취하면서 훗날을 도모한 셈이다. 분쟁의 씨앗은 일시적으로 잠복했으나, 생각보다는 이르게 표출되었다.

이렇게 바꾸겠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2005년 3월 31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7)의 제안이유에서도 어정쩡하게 타협한 사실을 인정한다. 동 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는 상반되게 전자상거래 촉진과 시장경쟁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형적으로 제정되어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에 편향적으로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유통질서의 혼란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가제 적용 범위가 좁혀지면서 2년 후에는 완전 폐지될 것이므로 현행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2조(정가표시및판매)제2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종류와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문화산업을 퇴보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한다(안 제22조제2항).

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할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할인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상실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잡지도 정가판매 대상에 포함한다(안 제22조제2항).

다. 법 제22조제3항의 예외 조항 중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은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1년 이상 도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재고의 개념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입법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에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출판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여 정가판매 범위에 포함한다(안 제22조제3항).

- 기간이 경과(과월호 등)한 잡지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

라. 지속적인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해 일반 공산품과 다른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5년 한시규정을 삭제한다(안 법률 제6721호 부칙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제2조 삭제).

아래는 이런 취지에 의거하여 마련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 조항의 초안이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정가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할인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1. 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를 “할인 판매를 한 자”로 한다.

법을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가제 지지 의견 광고는 “영어권과 출판 미발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언어 기반의 출판선진국에서 모국어의 발전과 지식문화 옹호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 예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물론, 가까운 일본”을 든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밖의 상황은 『세계의 도서정가제 현황 연구』(한국출판연구소, 2000)

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정가제가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신간서적은 2년간 정가로 팔아야 한다. 프랑스의 도서정가법인 랑법에 한 장을 할애해 소개하기도 했다. 역시 법으로 규정한 포르투갈에선 신간이 1년 6개월간 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스·스페인·룩셈부르크는 기한 규정이 없는 정가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는 기한 규정 없이 서적상 거래계약으로 정가제를 지킨다. 덴마크는 서적상 거래계약에서 신간의 1년간 정가판매를 규정한다.

또, 영국의 도서정가제 역사를 간추린 다음, 1997년 정가제 폐지 이후 나타난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한다. 미국은 출판 강국이면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다. “그 이유는 광대한 국토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출판 유통경로가 복잡다기하고 세분화된 유통시장에 정가제를 실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탁판매가 아닌 일시불 판매가 유통의 기본이 되”기에 도서정가제를 비효율적인 규제쯤으로 여겨서다.

갈등의 양상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정가제 관련 조항의 개정을 놓고 다투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갈등 양상은 동 법을 제정할 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판계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로 정가제를 지키려 한다면, 인터넷 서점은 어떻게 해서든 정가제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인터넷 서점의 여론몰이도 여전하다.

인터넷 서점 예스24 웹사이트의 도서정가제 찬반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무려 1 대 99다. 정확히는 5월 6일 오후 2시 40분 현재, 찬성은 전체 투표자의 0.83퍼센트(648명)이고, 반대는 99.16퍼센트(77,301명)이다. 찬반의 격차

가 이렇듯 엄청난 것은 반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 탓도 있다.

도서정가제 찬반투표- 무조건 정가대로만 책을 구매해야하는 도서정가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책도 현재처럼 할인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찬성(책은 어디서든 정가로만 팔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인터넷 서점 이용자의 정가제에 대한 몰이해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 도서정가제는 일종의 재판매가격 유지제다. 재판매가격유지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유통 단계별 사업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로운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를 제한하기에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저작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저작물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사용권을 구입하는 책의 소프트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서 독특한 유통 방식과 관련이 있다. 책은 서점을 통해 위탁판매된다. 서점이 현금을 내고 책을 매절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나중에 책값을 지불한다. 이때 서점에서 팔린 책값의 일부를 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점의 중간 마진이 아니라 출판사가 서점에 지불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다. 한때는 인터넷 서점이 선주문 방식의 판매 체제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책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인터넷 서점에도 재고가 쌓이고 출판사로 반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가의 보도’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도서정가제가 출판계의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할 만병통치약이나 전가(傳家)의 보도

(寶刀)는 아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가제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IMF 관리체제와 맞물린 도매상의 줄부도 사태 때의 교훈 덕분이다. 당시 필자는 모 월간지에 연재한 출판 칼럼에서 정부에 500억 원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그 글을 읽은 한 지인이 “500억 원 주면 정말 출판 유통망을 살릴 수 있느냐”며 다그쳐 물어 난감했었다.

도서정가제는 어중간한 형태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신·구간을 막론한 모든 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서점의 구별 없이 10퍼센트 정도의 할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정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출판인 요츠모토 마사히로도 이런 식의 변형 도서정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 당장은 도서정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가격 조정 기능과 위탁판매제 각각의 장점을 양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가제를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책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에게 더 이익이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도서정가제에도 분명 약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도 멀리 보면, 독자·저작자·서점인·출판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좋은 제도다. 정가제의 폐지는 도서 가격제가 1977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예전의 거리와 뒷골목에서 빚어진 씩씩한 풍경이 재현될까 걱정스럽다.

“고질적인 덤핑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렸고, 이를 막기 위하여 출협은 1962년 2월 ‘덤핑 판매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당시 종로6가 덕성빌딩 근처에서는 덤핑을 목적으로 조잡하게 제작된 2000여 종의 서적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때를 출판사상 가장 심한 덤핑 극성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에서) 